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재산세(토지) 부과취소(경정)결정(역삼동 *****)

재산세(토지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및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.

1. 납 세 자 : ***

2. 과세물건 : 역삼동 *****(임대주택 29세대, 근린생활시설 2개호)

3. 취소사유 : 본 물건 중 주택부분(임대주택 29세대)은 주택분 재산세로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므로, 근생부분의 부속토지 해당면적(182.26㎡)만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을 착오로 전체 토지면적(577.10㎡)이 과세되었기에 근생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취소함.

4. 취소내역 : 2014년 9월 정기분

세 목	당 초	취소(경정)	차 액	비 고
재 산 세 (토 지)	16,235,340	11,928,910	4,306,430	
도 시 지 역 분	0	0	0	
지 역 자 원 시 설 세	0	0	0	
지 방 교 육 세	3,247,060	2,385,780	861,280	
합 계	25,584,770	20,417,060	5,167,710	

- 첨부 1.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 2. 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관련자료. 끝.

